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## 〔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(2공구)〕

- 점검일시 : 2019.07.10 (수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윤원섭, 최영준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18단지 앞 복공판 설치작업장으로 진입하는 근로자 이동통로에는 안전난간 설치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, 근로자 통로주변에 원형 강관비계가 방치되어 있어 근로자가 발을 헛딛어 전도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즉시 제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		2019.07.15	
		<p>근로자 이동동선 내 파이프 제거 완료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18단지 복공판 설치작업 근로자가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 단부에서 중량물(LPG가스용기)을 이동작업 중으로 추락재해 관련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으니 안전난간 설치 및 작업계획을 보완하여 조치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</p>		2019.07.11	
		<p>복공판 상부 LPG가스용기 추락재해예방 안전난간대 설치완료</p>	

<p>○ 중량물취급 안전</p> <p>- 18단지 앞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강재들은 슬링 벨트에 한줄걸이로 묶인 상태로 운반할 경우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인양중 낙하관련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자재운반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23p (3. 양중작업의 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/p>		<p>2019.07.11</p> <p>자재운반구 사용 인양 방법 변경 및 교육완료</p>	
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18단지 앞 복공판 임시해체 구간에서 작업중 소형자재나 공구 등이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거나 낙하물방지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</p>		<p>2019.07.11</p> <p>자재인양구 하부 PP로프 결속 또는 발끝막이 설치 완료</p>	
<p>○ 건설기계 안전</p> <p>- 18단지 앞 작업중인 천공기는 도괴 방지를 위하여 철판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으나, 지반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, 사용된 철판사이 이격 및 단차가 발생하는 등 설치상태가 미흡하니 보완 조치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(도괴의 방지)</p>		<p>2019.07.11</p> <p>천공기 도괴방지 철판 설치완료</p>	

<p>○ 전도재해 예방</p> <p>- 18단지 앞 근로자 통행구간에 크레인 자재 인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, 협소한 통로변에 강재자재가 불안정하게 다단으로 적치되어 있어 근로자 이동간에 전도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이동 조치하기 바람,</p> <p>- 작업장 사면에 굴삭기 버킷이 방치되어 있어 전도 우려가 있으니 이동조치하기 바람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</p>		<p>2019.07.11</p> <p>18단지 근로자 이동구간 버킷 및 자재 이동조치완료</p>	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가스용기 운반용 대차에는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관리하기 바람, 가스용기 작업구간에서 흡연하는 근로자가 있으니 화재관련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</p> <p>- 또한, 흡연구역을 별도 선정하여 관리하기 바람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</p>		<p>2019.07.11</p> <p>가스/산소 운반용대차 소화기 비치 완료</p>	

<p>○ 흙막이가시설 안전</p> <p>- 굴착작업장 취약구간 주변에 집수정 설치 작업으로 추가굴착이 이루어진 구간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버팀시설을 설치,보완하기 바람</p> <p>- 굴착작업장 주변 사면 구간에우기철 지하수위 상승, 빗물유입 등으로 인한 변위발생 등이 우려되니 사면안정을 위하여 보강조치 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</p>		<p>2019.07.12</p> <p>굴착 작업 집수정 설치구간 버팀시설 보완완료</p>	
<p>○ 중량물취급 안전</p> <p>- 현장에서 사용되는 마대는 항공마대를 사용하기 바람,항공마대는 마대 용량의 90%이상 적재 금지 및 밑을 감싸는 것을 사용하기 바람</p> <p>- 사용중인 항공마대 일부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운반시 위험하니 폐기 처리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3,015(자재운반구,항공마대)</p>		<p>2019.07.11</p> <p>항공마대 폐기조치완료</p>	
<p>○ 중량물취급 안전</p> <p>- 현장에서 사용중인 벨트슬링이 손상되어 양중 작업시 위험 하니 반출 또는 폐기 처리 요함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31(벨트슬링)</p>		<p>2019.07.11</p> <p>손상된 벨트슬링 폐기 및 교체완료</p>	
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가설경사로의 비탈면 경사각은 30도 이하로 하고 15도 초과 시 등간격으로 미끄럼막이를 설치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(가설경사로)</p>		<p>2019.07.11</p> <p>가설경사로 구간 이동통로 경사 계단 재설치 완료</p>	
<p>○ 사면 안전</p> <p>- 17단지 지하차도 굴착부의 사면부가 안식각을 초과 하고,사면부의 토사가 사질토로 우기시 사면부의 토사가 침식,세굴 등으로 2차 안전사고 우려되며,또한 임시로 적치된 ㄱ형강이 밀림현상으로 이 또한 2차 안전사고 우려되니 사면 보호,보강을 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(지반붕괴 위험방지)</p>		<p>2019.07.12</p> <p>17단지 지하차도 굴착부의 사면 보호,보강조치완료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현장에서 사용중인 임시 안전 난간대 파이프 단부가 돌출되어 근로자가 통행시 찔림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돌출부분에 보호캡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 업무 등)</p>		<p>2019.07.11</p> <p>안전 난간대 파이프 돌출 구간 파이프캡 설치완료</p>	

<p>○ 흠막이가시설 안전</p> <p>- 17단지 지하차도 굴착 중인 구간에 굴착과 동시에 wale 및 strut를 즉시 설치 하여 굴착부 안전성을 확보 바라며 ,일부 구간은 H-PILE 근 입부의 근입깊이가 부족 하여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신속히 구조적인 안정성을 검토후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.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</p>		<p>2019.07.15</p> <p>17단지 지하차도 구간 버팀 설치완료</p>	
<p>○ 건설기계 안전</p> <p>- 현장에서 사용중인 굴삭기는 근로자 협착 및 충돌재해 예방을 위하여 장비실명제를 부착 바라며, - 또한 혹해지 장치를 설치 하기 바라며,운전자가 이석시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방지 요망.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32(굴삭기)</p>		<p>2019.07.11</p> <p>굴삭기 혹해지 장치 및 장비실명제 카드 부착완료</p>	